제 970 호
1993. 8. 13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상배
공보관 전영호
전화 : 725-7894
인쇄 : 서울특별시 [illegible]
전화 : 72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773 호 : 서울특별시 한국마사회에 대한 마권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 3
제 1774 호 : 서울특별시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 4

◎ 고 시
제 304 호 : 일반가스사업 허가기준고시 …… 4
제 305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일부변경인가고시 …… 9
제 30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 10
제 307 호 : 모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 11
제 308 호 : 육류연동가격고시 …… 11

< 이 면 계 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196

제 309 호 : 도시계획사업 (공원) 실시계획인가 ····· 12
제 310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 12
제 311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지적승인 ····· 15
제 312 호 : 하천토지점용허가고시 ····· 16

◎ 공 고

제 312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업체지정취소 ····· 16
제 315 호 : 아시아선수촌및공원등기본설계현상공모예비심사당선작
공고 ····· 17
제 316 호 : 건설업 (전문공사업) 면허취소 ····· 17
제 317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공람공고 ····· 18
제 318 호 : 투기과열지구지정 ····· 19
제 319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갱신공고 (제 3 차) ····· 19
제 321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계획공람공고 ····· 21
제 323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업체지정취소 ····· 22
제 32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 22
제 325 호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열람 ····· 23
제 327 호 : 도시계획사업 (공원내운동장조성) 준공변경 ····· 23
제 330 호 : 서울특별시관내일부지역건폐율지정공고 ····· 24
제 332 호 : 도로공사계획 ····· 25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한국마사회에 대한 마권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6.16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서울특별시조례제 1773 호

서울특별시한국마사회에대한마권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88올림픽 경기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 국민체육향상의 촉진을 위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불균일과세) 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법 제 234 조의 10 및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 61 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마권세액의 100 분의 50 을 경감한다.

제 3 조(사무처리의 위임)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무처리는 한국마사회 경마장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 4 조(면제신청) ①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균일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경감처리할 수 있다.

제 5 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 년 4 월 1 일 이후 승마투표권 발매에 의하여 얻어지는 마권세 해당분부터 적용하되 한국마사회의 본경마장 부지 및 건축물과 입목등을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완료와 동시 본 조례를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조례는 1989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세마을유아원에대한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3.6.16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

◎서울특별시조례제 1774 호

서울특별시새마을유아원에대한 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과 교육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면제대상)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대상은 유아교육진흥법 제 9 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새마을유아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등기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로부터 1 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 3 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면제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304 호

일반가스사업허가기준고시

가스사업법 제 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4 조 규정에 의한 일반가스사업허가 기준 및 공급권역을 동력자원부 지침 (가스 1379-1691:82.11.20)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6.13

서 울 특 별 시 장

제 1 장 도시가스공급권역

제 1 조 (권역) 시일원의 가스공급을 효율적으로 균형있게 보급발전시켜

다핵 생활권의권으로 조기 구축 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권역을 5대권으로 설정한다.

구 분	권역명	지 역	비 고
제 1 권역	강 서 권 (89)	강서 (19), 영등포 (22), 동작 (18), 강남 (6), 관악 (24)	72.11.14 공급개시 (대성)
제 2 권역	강 남 권 (76)	강동 (20), 강남 (26), 경기과천 (2개리) 경기성남시 (28)	80.2.15 공급개시 (대한)
제 3 권역	동 부 권 (177)	동대문 (41), 성동 (30), 성북 (30), 도봉 (35), 종로 (13), 중 (16), 경기의정부시 (12)	83.3.30 공급개시 (극동)
제 4 권역	서 부 권 (91)	서대문 (22), 은평 (15), 마포 (24), 용산 (20), 종로 (8), 중구 (2)	72.11.11 일부 공급 개시 (대성)
제 5 권역	구 로 권 (31)	구로 (26), 강서 (5)	

* 제 1356 호 ('83.6.10) 에 의거 신정·목동 신시가지 단지는 제 1 권역에 포함됨.
* ( ) 행정동 기준수

제 2 조 (조정) 허가권자는 도시가스 사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 1 조 내용을 공급권역을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권의 통폐합 사유가 발생할 때
2. 권역별 사업자가 지역적 여건으로 배관부설 및 조기공급이 불가능하고 인접권역에서의 배관부설이 조기공급에 용이하다고 판단될 때
3. 열엔지 공급에 대비하여 기존 도시가스의 열량변경 작업을 하기 위하여 타권역과 병행사업수행이 필요할 때
4. 도시가스요금 일원화를 위하여 권역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5. 인접도시에 도시가스 연장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 3 조 (도면열람) 공급권역의 조정도는 2만5천분지 1의 도면에 표시하여, 보관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제 2 장 일반가스사업허가요령및기준

제 4 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서울시 관내에서 영위하는 일반가스사업자와 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을 제출한자에 이를 적용한다.

제 5 조 (사업자 지정 및 사업허가)

1. 가스사업을 하고자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는 가스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3 조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급권역의 일반가스사업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o 사업계획서
o 법인의 경우 정관및등기부등본
o 대표자 신원증명서
o 과거 3 년간의 기업경영실태증명서 (단, 개인인 경우 공인자산 평가조서)

2. 도시가스 공급의 효율적인 보급확대와 지역여건상 불가피하여 기존사업자에게 공급지역을 추가하여 사업명령을 하였을때에는 당해지역 사업자 지정을 받은것으로 간주한다.

3. 사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입지선정, 허가서류 작성 등 소요기간을 감안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4. 가스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허가기준을 고려하여 허가신청서에 세부사업시행계획서등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 3 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허가기준) 사업자 지정을 받은자가 가스사업의 허가 (변경) 를 받고자 할때에는 가스사업법 시행령 제 4 조 및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청기한

사업허가는 사업자 지정을 받은날로부터 별도 정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건설부지 확보등에 수반된 관계규정의 절차이행지연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청자의 자격

가. 가스사업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당해 공급권의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3. 공사착공 및 공급개시

가스사업 개시가 일반수요에 적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착공은 사업자 지정을 신청한날로부터 1 년이내에, 가스공급개시는 3 년이내에 개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

4. 자금확보 및 조달

가. 가스사업착수일로부터 가스공급개시전까지 소요되는 시설 및 운영자금등 총소요자금의 3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능력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공급개시 이후에는 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2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수익율 확보

가스사업 개시일로 부터 사업기간 10년간의 경제적 수익율이 10% 수준을 확보할수 있도록 자기자본의 유지와 시설투자가 적정하게 계획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6. 공급 계획

가. '87 열엔지 공급에 대비하여 열량변경 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적정한 열량으로 안전하게 제조공급되도록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가스공급 계획은 사용처 구조 및 용도별로 균형있게 계획수립 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단독주택은 공급전수를 기준으로 하여 가스공급 개시에는 10%이상, 5년부터는 20%이상 확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시설계획

가. 가스제조 설비는 일생산 10만㎥ 규모이상 이어야하며, 예비설비로서 주설비 50%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10만㎥/일 제조시설이 2기 이상 구분되어 가동율 50%이하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관(공장에서 정압기까지의 배관)및 정압기는 가스공급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확실히 설치완료 되도록 계획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다. 공급지역내 배관망은 환상 간선 부설을 원칙으로 안전공급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인접 타 공급권과도 가스공급 중단에 대비하여 상호 교통할 수 있는 공급체제가 되도록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라. 가스 제조설비는 열엔지 공급시 열량변경을 수반하지 않는시설이어야 하며, 대체시설로서 활용이 용이하고 열엔지 공급전에도 안전, 안정, 안가공급이 가능한 공정이어야 한다.

마. 공급배관은 취사, 난방, 영업, 기타 용도를 충분히 감안한 장기계획(10년이상)에 의하여 설치되도록 계획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8. 제조설비 부지

가. 제조설비를 설치할 부지의 위치는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에서 정한 적정한 지역이어야 하며, 신청자가 확보 또는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확보 또는 선정할 부지는 33,058㎡ (10,000평)정도의

적정규모이어야 하며, 가스공급 개시 이전까지 매입할수 있는 재원능력이 있고, 이에 관한 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9. 기술능력

가.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고 적정한 기구를 조직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인원은 에너지(연료)분야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기타 기술능력을 축적한 자로 하여 안전유지 및 정밀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 타

가. 사업허가 신청서중 사업계획서 등은 사업자 지정신청시 제출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준범위내에서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사업계획서의 제조원가 및 손익계산은 타당성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며, 매출가스요금은 열량기준에 의한 기존 타사업자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적정 명확하게 조사 작성하여야한다.

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제반비용은 적정 명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기존 타사업자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7 조(사업자 지정의 경합처리등)

1) 신규로 설정된 공급권에 2인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서등을 토대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할 비용, 가스공급단가, 자기자본, 공급개시시점, 부지확보등을 검토 판단하여 선정한다.

2) 신규 공급권역에 사업계획을 제출한자가 지정된 기간내 본기준에 적정한 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권역을 인접한 타사업자의 권역에 편입하여 확대조정하거나 잠정 유보후 사업신청자가 있을때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제 8 조(사업의 양도, 양수및 합병의 금지) 가스사업자 지정 또는 사업허가를 받은자는 가스공급을 개시하기전까지 가스사업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양수하거나 합병할수 없으며 이를 인가하지 않는다.

제 9 조(허가의 취소등) 가스사업법 및 본고시에 의하여 허가(지정) 또는 명령받은 신규(기존)사업자가 본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의 추진이 극히 부진하다고 판단될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가스사업법 제26조에 의하여 허가(지정)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 또는 제한한다.

2) 가스사업법 제40조및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지역의 조정 또는 사업의 통폐합을 명령(의뢰)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으로 인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사업자는 다음에 정한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시행계획을 고시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자기자본 증자계획은 3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동 자산에 대한 20% 이상을 6월이내에 자기자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주제조시설로 10만㎥/일 규모와 예비시설로 5만㎥/일 규모를 1년이내에 확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만㎥/일 제조시설이 2기이상 구분되어 가동율이 50%이하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허가받은 공급지역내에 설치하여야할 본관(정압기 포함)은 2년 이내에 부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가스공급 중단에 대비한 인접타공급권과의 연결배관과 공급권내 환상간선 배관은 2년이내에 부설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공급가스가 '87 공급될 열연지 열량(11,000Kcal/㎥)과 상이할 때에는 '86 말까지 열량변경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바. 공급지역내 단독주택의 가스공급은 총공급건수를 기준으로 2년내 10%이상, 5년내 20% 이상을 확보 공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 305 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공고제236호(83.4.30)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한바 있는 아현1구역과 신길2구역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30일간 도지이해 관계인 등에게 공람한바

2. 동계획 일부변경 공고내용에 대한 3건의 이의신청이 있어 일절 심의하여 동변경 계획을 일부변경 조정하여

3. 도시재개발법 제41조와 동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일부변경 고시한다.

4. 동고시 내용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 송달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동고시로 갈음케 되며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 공람한다.

1983. 6.13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명 칭 :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일부변경 인가고시
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다. 위 치 : 마포구아현동아현 1 구역 (2,3,9,16,21,24,26 구획내 일부택지)
영등포구신길동신길2 구역 (7,8 구획내 일부택지)
라. 변경내역 : 별도 개별통보문 참조
마. 관계도서 : 관할구청 (주택과) 에 비치열람.

◎서울특별시고시제 306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건설부 고시 제481호 (81.12.24) 로 택지개발사업 시행 고시된 강남구 개포동51-1 일대 (5부락일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사업 (학교) 시행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건설부 고시 제521호 (81.12.31)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6.13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강남구 개포동51-1 일대 (5부락일부)
나. 사업의종류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다. 사업의 규모
ㅇ시설면적 - 16,298㎡
ㅇ건축면적 - 1,910.46㎡
ㅇ건축연면적 - 9,481.86㎡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85번지 학교법인 중동학원 이사장 함 인 섭
마. 사업예정기간
ㅇ착수년월일 - 83.6.
ㅇ준공예정일 - 84.2.10
바.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07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 건설부 고시 제 481 호 (81.12 24) 로 택지개발사업시행 고시된 강남구 개포동산 4 번지일대 (3 부락일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 시행령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521 호 (81.12.31)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6.13

서 울 특 별 시 장

가 .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산 4 번지일대 (3 부락일부)

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다 . 사업의 규모

- o 시설면적 - 21,702 ㎡
- o 건폐면적 - 3,230.19 ㎡
- o 건축연면적 - 11,358.34 ㎡

라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5 번지 학교법인 중동학원 이사장 함 인 섭

마 . 사업예정기간

- o 착수년월일 : 1983.6. .
- o 준공예정일 : 1984.2.10.

바 .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 지적 ,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사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08 호

육류연동가격고시

육류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농수산부 훈령 제 490 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돼지고기 연동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6.14

서 울 특 별 시 장

1 . 육류 연동가격

돼지고기 (정육 600 그람당) 2,000원

2 . 시행일

1983.6.16 부터

◎ 서울특별시고시제 309 호

도시계획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176 호(82.4.29) 도시계획(공원)시설 결정 및 동고시제 256 호(83.5.10)로 지적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71 호(83 5.23)로 실시계획 공람 공고된 도시계획사업(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6.16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가 38-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공원)
파고다공원정비사업
다. 사업규모
면적 19,639 ㎡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종로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83.6.16-84.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항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항

◎ 서울특별시고시제 31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시고시제 3 호(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성동구화양동 119-5 호 - 111-124 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6.16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의 시행지
성동구 화양동 119-5 호-111-124 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포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로폭 8 m 연장 300 m 아스팔트포장 20.4 m 하수도공사 (흄관 D= 600 mm, L : 300 m).

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성동구 자양동 220-147
성동구청장 이 원 증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 - 82.6.
준공 - 83.7.2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동구화양동 132-83	대	16	
" 119-8	대	2	
" 112-22	대	2	
" 111-214	대	3	
" 111-213	대	14	
" 111-212	대	1	
성동구송정동 56-4	철도선로	134	
" 56-40	대	2	
" 56-41	대	1	
성동구화양동 132-76	도 로	112	
" 121-1	"	136	
" 110-36	"	173	
" 110-2	"	76	
" 132-85	대	2	
" 132-82	대	5	
성동구송정동 56-42	대	12	
성동구화양동 132-70	도 로	79	
" 116-6	철도용지	7	
" 114-13	도 로	392	
" 115-2	"	555	
" 111-6	"	119	
" 112-2	"	235	
" 111-110	"	635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구 분	위 치	소 유 자	토지수용법정 4조 3항관계인
토지	성동구화양동 132-83	성동구화양동 132-7 이성실	
	〃 119-8	미 등 기	
	〃 112-22	〃	
	〃 111-214	〃	
	〃 111-213	〃	
	〃 111-212	서 울 시	
	성동구송정동 56-4	미 등 기	
	〃 56-40	서 울 시	
	〃 56-41	미 등 기	
	성동구화양동 132-76	중구회현동 1 가 100-131 어윤택	
	〃 121-1	서 울 시	
	〃 110-36	〃	
	〃 110-2	〃	
	〃 132-85	미 등 기	
	〃 132-82	〃	
	성동구송정동 56-42	〃	
	성동구화양동 132-70	서 울 시	
	〃 116-6	중구산림동 190 길선현일	
	〃 114-13	서 울 시	
	〃 115-2	〃	
	〃 111-6	미 등 기	
	〃 112-2	서 울 시	
	〃 111-110	〃	
건물	〃 119-5	중구남창동 205-49 심금자	
	〃 132-6	성동구화양동 62 김종환외 7	
	〃 132-7	성동구화양동 132-7 이성실	
	〃 114-5	성동구능동 260-1 김현철	(주) 제일은행 중구충무로 1 가 53-1 (근저당)
	〃 112-17	강동암사동 433-23 김근영	

아. 기타의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445-8705) 로 문의 바람.

○서울특별시고시제31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지 적 승 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13호(82. 8.12)및 동고시 제79호(83.2 14)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를 도시계획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6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 승인한다.

2. 관계 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6.17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적㎡(평)	비 고
신설	학 교	강서구신월동 169-4 일대	11,524 ㎡	
〃	〃	강서구화곡동 산22-3 일대	11,570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류	6	120	강서구신월동 197-1	강서구신월동 198-2	폐지
변경	〃	〃	〃	〃	〃 〃	〃 〃	
기정	〃	〃	〃	100	〃 〃 169-5	〃 〃 169-1	폐지
변경	〃	〃	〃	〃	〃 〃	〃 〃	
기정	〃	〃	〃	80	〃 〃 168-6	〃 〃 198-1	폐지
변경	〃	〃	〃	〃	〃 〃	〃 〃	
기정	〃	〃	4	20	〃 〃 170-16	〃 〃 170-16	폐지
변경	〃	〃	〃	〃	〃 〃	〃 〃	
신설	〃	〃	6	60	〃 〃 198-1	〃 〃 198-2	

다. 지적승인도면1부(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12 호

하천토지 점용허가 고시

당시 한강구역내에 하천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한강종합개발사업 감리업무수행 현장사무실 신축을 위한 하천토지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6.17

서 울 특 별 시 장

o 현장사무실 신축을 위한 토지점용 허가 내용

점용수허가자	점 용 위 치	점용면적	점 용 내 역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대 표 백 문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903 일원	496 ㎡	현장사무실

o 점용허가기간 : 1983년6월15 일- 1985년12월31일

* 허가내용 및 허가기간은 한강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312 호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업체 지정취소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특정 열 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업체를 지정취소 처분 하였음을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한다.

1983.6.13

서 울 특 별 시 장

지정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도봉제37호	중앙설비	수유동 254-9	유배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27 조 3 항(기술요원미보유)	지정취소

○서울특별시공고제 315호

아시아선수촌 및 공원등 기본설계 현상공모 예비심사 당선작공고

'86년도 아시아 경기대회를 대비하여 건설하는 아시아 선수촌 및 공원등 기본설계 현상공모 예비심사 당선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가. 당선작품수 : 6점

나. 당선작

응모접수번호	당선작품제출자 (대표자)
아-1008	金振晩
아-1016	Charles Kober Associates Architects (Charles Kober Todd Bennitt- 미국) (주) 우성건설(金鎭, , 白玉石)
아-1040	성림건축설계(林長烈)
아-1044	Edaw Inc.(Christopher Degenhardt-미국) 대호건축(金寬組)
아-1068 아-1070	우원건축연구소(강기호, 문정일, 조성룡)
아-1102	椎名政夫건축설계(椎名政夫, 內藤恒方-일본)

1983.6.15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공고제 316호

건설업(전문공사업)면허 취소

다음 업체의 건설업(전문공사업) 면허를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소 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

1983.6.14

서 울 특 별 시 장

• 다 음 •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법적근거
82-02-288(토공) 82-13-145(상하수도)	대원기업(주)	박수근	강남구신사동 629-25	83.6.14	기능공문서상채용하여 면허 취득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제5호

◎서울특별시공고제317호

도시계획사업(시장) 시행 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77호(71.8.24)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강남구 대치동 971-12호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 허가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6.15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977-12호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

다. 사업의 규모 :
- ㅇ 대지면적 - 1,650 ㎡
- ㅇ 건축면적 - 819 〃
- ㅇ 연 면 적 - 3,367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 139-99 대치산업(주) 최 종 경

마. 사업예정기간 : 1983.6-1984.12.30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아.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도시정비과로 문의 바람 (설계도서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318 호

투기과열 지구지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3 조의2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동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1983.6.15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1. 지정구역 : 강남구대치동 65 번지외 13필지
2. 면 적 : 8,413.80 ㎡
3. 아파트명 : 대치동쌍용아파트
4. 규 모 : 아파트 14 층 1 동 112 세대
5. 사업주체 : 쌍용종합건설(주)
   대표 김 석 준

◎서울특별시공고제 319 호

제2종 전기공사업면허갱신공고 (제3차)

전기공사업법 제 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갱신 발급하였기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83.6.16

서 울 특 별 시 장

면 허 갱 신 업 체 명 단

면허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유효기간
39	근 동 건 공 사	김정균,예광해	강동구송파동 8-4	83.7.3 ~ 88.7.12
42	상진전기건설(주)	최 야 애	강동구천호동 409-13	〃
62	상 명 전 기 공 사	이 상 찬	강서구신정동 952-5	83.7.20 ~ 88.7.19

면허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유효기간
63	대 야 전 기 공 사	서 종 훈	도봉구미아동 134-21	83.7.20~88.7.19
68	내외전기건설공사	전 권 수	동대문구상봉동 130-131	〃
70	동 양 전 기 건 설	구 자 창	강동구마천동 126	〃
75	한 전 사	한 병 갑	동대문구묵동 244-144	〃
77	세 한 전 설 (주)	추 범 헤	강남구신사동산 65-4	〃
78	명 전 건 설 기 업 사	이 만 수	은평구역촌동 13-41	〃
82	대 일 전 기 공 사	정 선 조	용산구서계동 261-23	〃
83	극동전기건설공사	심 재 영	도봉구방학동 668-8	〃
84	서울전력건설 (주)	이영구,정양모	동작구사당동 1042-7	〃
86	(주) 코 리 아 건 설	김 석 재	종로구낙원동 284-6	〃
87	범 진 산 업 (주)	김 삼 봉	성북구종암동 14-2	〃
88	갑 우 전 설 (주)	장 정 기	강서구신정동 900-14	〃
90	황 성 전 기	임 재 규	은평구녹번동 31-36	〃
92	한 국 전 기 공 업 사	임 봉 규	도봉구수유3동 167-25	〃
100	청 일 전 기 공 사	김 청	은평구녹번동 24-1	〃
104	신 전 사	진 교 영	용산구원효로1가 46-18	〃
106	영 한 설 비 (주)	권 태 인	종로구숭인동 1389	〃
107	성 림 기 건 (주)	최 세 열	동대문구신설동 103-9	〃
109	(주) 삼 건 사	정 여 용	강남구방배동 761-2	〃
112	범 우 전 기 기 업 사	이 영 환	도봉구미아동 323-55	〃
113	욱 승 산 업 (주)	연 우 남	성동구자양동 220-149	〃
114	금 성 전 업 공 사	김 동 수	도봉구번동 464-16	〃
115	제 원 전 기	서 동 열	동대문구제기동 892-121	〃
117	일 오 전 기	김 용 익	강남구논현동 61-1	〃
119	유 림 건 설 공 사	추 정 [illegible]	동작구대방동 335-15	〃
126	원 창 전 업 사	하 홍 만	〃 사당1동 1029-38	〃
127	대 한 전 업 사	신 현 익	도봉구미아3동 126-4	〃
128	독 일 전 력 (주)	김 기 조	강동구길동 458-5	83.7.24~88.7.23
130	성 원 개 발 (주)	최두형,심두한	종로구원남동 194	〃
134	송 전 사	송 대 영	동작구사당동 89-61	〃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유효기간
135	강남토건건설(주)	유화정	동대문구상봉동 116-34	83.7.24~88.7.23
136	금광건설(주)	유종국	강남구방배동 864-23	〃
137	대양전기	이형주	은평구대조동 14-63	〃
139	부광전기공업사	장순근	동대문구장안동 190-28	〃
141	원흥건설(주)	이원효	〃 상봉동 128-72	〃
143	대영전기공사	임충한	종로구연건동 195-11	〃
146	강서전력	신진선	강서구신정동 202-5	〃
148	낙원전기건설공사	심재호	도봉구수유동 191-27	〃
	이상 41개 업체			

◎서울특별시공고제 321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44호 (77. 5.11)로 학교변경 결정(추가)및 지적승인 되어 서울특별시 공고 제491호(82.12.2)로 도시계획사업(학교)완료 공고된 강남구반포동 753번지외 1필지 학교용지에 대하여 증축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학교)시행 허가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6.16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강남구반포동 753 번지외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다. 사업의 규모
- o 대지면적 - 42,012 ㎡
- o 기존건축면적 - 18,860.5 ㎡
- o 신축면적 - 304 ㎡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강남구반포동 753 번지외 1필지 학교법인 일주학원 이사장 이임용
마. 사업예정기간
- o 착공예정일 : 1983.8. 1
- o 준공 〃 : 1983.9.30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생략)

아.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 바람 (설계도서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323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취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0 조 규정에 의거 아래특정열사용 기자재시공업 지정업체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1983.6.16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시공업 지정취소 내역

지정번호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취 소 사 유	비고
서대문제 53 호	영창설비	연희동 77-30	황수창	시공업지정의 결격사유 발생	

◎서울특별시공고제 324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완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 237 호 (82.6.26)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되고 동고시 제 84 호 (83.2.15)로 변경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공사완료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 2 제 85 조 및 동고시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6.16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의 시행지 : 성동구구의동 238-1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명성여고 체육관신축

다. 사업의 규모

o 면 적 - 2,510.48 ㎡

o 연건평 - 1,987.2 ㎡

(당초 1,860.6 ㎡)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중구필동 3 가 26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박 기 종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o 착수 - '82. 7.30

o 준공 - '83. 6.

바. 위치 및 계획평면도면 : 별첨 생략

아. 준공도면 : 별첨생략
사. 기타의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445-8705)로 문의 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 325 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4 및 은평구,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일원에 대하여 전원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가공고 한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 및 경기도고양군청에 각각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보인다.

1983. 6. 17
서 울 특 별 시 장

가. 154㎸ 홍은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 : 154㎸ 홍은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성명 및 주소
한국전력공사 사장 박정기
서울특별시 강남구삼성동87번지
3)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서울시은평구불광동산 42-4일원
면적 : 4,468㎡
4)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 별첨
5)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및주소 : 별첨

나. 154㎸ 홍은송전선 건설사업
1) 사업의명칭 : 154㎸ 홍은송전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한국전력공사 사장 박정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7번지
3)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서울시은평구, 경기도고양군신도읍일원
면적 : 2,796㎡
4)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 별첨
5)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및주소 : 별첨
o 별첨 도면표시와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327 호

도시계획사업(공원내운동장조성) 준공변경

1. 건설부 고시 제138호(77.7.9)도시 계획 시설(공원)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03(79.7.9)호로 시행허가 동고시 제305호(82.7.13)로 준공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변경되었기 도시계획법 제85조 제57조의2 및 건설부 고시 제521호(81.12.31)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3. 6. 17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74-12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공원내운동장조성)

명칭 : 관악산운동장조성

다. 사업시행면적 :

허가면적 : 9,848.3 ㎡

당초준공면적 : 9,382 ㎡

변경 〃 : 9,498 ㎡

라. 변경사항

허가시	당초준공		변경준공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관악구봉천동산174-12	좌동	938.2 ㎡	봉천동1558-33	9,363.8 ㎡	운동장
관악구봉천동1555-15	1555-16	205.9 ㎡	좌동	205.9 ㎡	어린이놀이터
관악구봉천동592	누락		봉천동1558-35	134.6 ㎡	운동장

마.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영락학원 이사장 최 창 근

바. 사업의 착공 및 준공

착공 : 79.10.10

준공 : 82.6.15

사. 준공내용 : 별첨 측량성과도 및 설계도서와 같음.

(준공도면 게재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330호

서울특별시관내일부지역건폐율지정공고

건축법 제39조제2항및 동시행령 제8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내일부 지역의 건폐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동시행령 제84조제3항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3. 6. 18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4대문내 다만, 도심지학교 이적지는 학교이적에 건축제한에 의하고 도시설계 구역내 건축물은 도시설계 내용에 의함.

2. 지정 건폐율

구 분	지정 건폐율
4대문내등	
ㅇ재개발지구	10분지 5이하
ㅇ기타지역	10분지 4.5이하

◎서울특별시공고제 332호

도로공사 계획

1. 도로법시행령 제24조 및 도로법 시행규칙 17조에 의거 도로공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 열람케 한다.

1983. 6. 18

서 울 특 별 시 장

도로공사 계획 조서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시행자	공사기간	비고
서울특별시도	신림 10동 342-128 간	신림10동(지구) 진입로 개설	관악구청	83.7-83.12	
〃	봉천 8동 1526-1534간	봉천 8동비안유아원 진입로포장	〃	83.7-83.9	
〃	신림 1동 412 주변	신림1동412주변포장	〃	〃	
〃	봉천 7동 180 주변	봉천7동180주변포장	〃	〃	
〃	신림 9동 250-25-1533-2간	신림9동사무소진입로 포장공사	〃	〃	
〃	봉천동산 101-99-101-105 간	봉천동산복도로개설	〃	83.7-83.12	
〃	신림 1동 1616 주변	신림1동1616주변 하수도	〃	83.7-83.9	
〃	봉천동 645 주변	봉천동645번지하수도	〃	〃	
〃	신림본동 409 주변	신림본동 409 〃	〃	〃	
〃	신림 2동 103 〃	신림2동 103 〃	〃	〃	
〃	봉천 4동 1586 〃	봉천4동 1586 〃	〃	〃	

노건명	공사구간	공사명	시행자	공사기간	비고
서울특별시도	신림본동92 주변	신림본동92 번지하수도	관악구청	83.7-83.9	
〃	봉천10동872 〃	봉천10동872 〃	〃	〃	
〃	신림9동818 〃	신림9동818 〃	〃	83.7-83.12	

위와 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니 본구간내 지하매설물(전화, 전기, 상하수도, 도시까스)등 유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본공사 기간중에 시행토록 하기 바란다.

사 령

◎ 1983년 6월 10일자 명제 209호

차 진 선

지방별정직 7급상당(비서)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시장실(외전과) 근무를 명함

명제 21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신영철	지하철건설본부 파견근무연장 (83.6.10-83.12.31)	영등포구	지방기계기사
황광식	〃	삼공과	지방전기기사보
권종연	〃	지하철운영사업소	〃
김동기	〃	〃	〃
최재광	〃	영등포구	지방전기기원
이해량	〃	용산구	〃
전영성	〃	종합종말처리사업소	〃
김만수	〃	수원기전과	〃
송재승	〃	팔당수원지사무소	지방전기기원보
이재석	〃	종합종말처리사업소	〃
박영선	〃	서대문구	지방전축기원보
최진복	〃	강남구	〃
정윤순	총무과파견근무연장 (83.6.10-83.12.31)	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통신기사

◎1983년6월13일자 령제218호

내 무 국
지방행정사무관 정 순 구

민방공경보통제소 파견근무를 명함.
(83.6.13-83.9.30)

◎1983년5월14일자 령제220호

정 신 병 원
지방별정직7급상당 이 명 선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령제221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위 준 량	행정주사보에 임함	관악구 민방위과	지방행정주사보
남 영 창	〃	〃 산업과	〃

◎1983년6월15일자 령제222호

강남구반포2동
지방행정서기보 안 미 자

인천직할시 전출을 명함

◎1983년6월13일자 령제223호

종합건설본부
지방건축기사보 이 준 환

지하철운영사업소

시립운동장
지하철운영사업소 이 영 주
지방전기기사

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전기기사 성 무 황

시립운동장

령제224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최 성 욱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강남구근무를 명함	총무처 감사관실	행 정 주 사
임 광 남	〃 〃 중구근무를명함	〃 인사국	〃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유 창 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노동부 직업안정국	행정주사
임 탁 중	총무처 전출을 명함	강서구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주사
이 기 복	〃	강남구 주택과	〃
김 연 호	상공부전출을 명함	〃 수도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 1983 년 6 월 15 일자 령제 225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원 경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영등포구세무 2 과	지방행정주사
최 기 헌	〃	〃 토목과	지방행정주사보
엄 인 섭	〃	용산구건설관리과	지방행정서기
박 종 식	〃	동작구 〃	〃
김 국 환	〃	서대문구 〃	지방행정서기보
황 혁 천	〃	마포구건축과	지방건축기사
한 덕 규	〃	남부건설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이 영 민	〃	도봉구수도공사과	〃
김 성 도	〃	마포구토목과	〃
황 연 진	〃	동작구 〃	지방토목기원
최 종 열	〃	지하철건설본부건설 2 과	〃
박 재 국	종합건설본부	관악구토목과	지방토목기사보
김 영 안	교 통 국	성북구도시정비과	지방행정주사보

령제 226 호

성 명	발 령 부 서	호 봉	직 급	비 고
김 창 년	경찰국면허과	1 호 봉	지방별정직 7 급상당 (기계처리사)	
민 병 훈	강 서 구	3 호 봉	〃 (고압가스관리기사)	

령제 227 호

종합건물본부
지방건축기좌　유 정 영

동 작 구

◎ 1983 년 6 월 20 일자　령제 228 호

수원기전과
지방토목기사보시보　김 홍 기

수원기전과　지방토목기사보

◎ 1983 년 6 월 15 일자　령제 229 호

지 적 과
지방지적기원보　이 지 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 울 특 별 시 장

◎ 1983 년 6 월 11 일자　령제 230 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설국토목과
지방토목기좌　어 윤 화

토목기좌에 임함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설국토목과과장에보함

대 통 령

◎ 1983 년 6 월 15 일자　령제 231 호

주 택 기 획 과
지방건축기사보　김 선 방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83.1.31 자 감봉 1 월처분 (발령제 38 호) 을 견책으로 변경함.

녹 지 사 업 소
지방농림기사보　오 대 근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83.1.31 자 해임처분 (발령제 38 호) 을 정직 3 월로 변경함.

서 울 특 별 시 장

◎ 1983 년 6 월 7 일자　령제 232 호

총 무 처
토목기좌시보　정 철 권

토목기좌에 임함.
서울특별시내무국근무를 명함

총 무 처
농림기좌시보　박 인 규

농림기좌에 임함.
서울특별시내무국근무를 명함.

◎ 1983 년 6 월 25 일자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김 상 법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내무국근무를 명함.

대 통 령

◎ 1983 년 6 월 17 일자 령제 233 호

중구건설관리과
지방행정사무관 김 재 헌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성동구건설관리과
지방행정사무관 김 건 식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구로구건설관리과
지방행정사무관 김 영 필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김 원 식

경 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

령제 234 호

보광동수원지사무소
지방기계장 (기능직 7 등급) 이 문 길

공무원 교육원

령제 236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유 양 범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 2 호에 의거 감봉 1 월에처함 강서구근무를 명함.	구로구건설관리과	지방행정주사
권 영 섭	지방공무원법 제69 조제 1 항 제 1, 2 호에 의거 정직 3 월에처함	〃	지방행정서기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형 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2호에 의거 감봉1월에 처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구로구건설관리과	지방행정서기보
박 기 석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1, 2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중구건설관리과	지방행정주사
조 원 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1, 2호에 의거 감봉3월에 처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	지방행정주사보
신 의 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1, 2, 3호에 의거 해임에 처함	〃	지방행정서기보
홍 순 영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1, 2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성동구건설관리과	지방행정주사
전 병 탁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1, 2호에 의거 감봉3월에 처함 정신병원 근무를 명함	〃	지방행정서기
김 일 섭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1, 2, 3호에 의거 해임에 처함	〃	지방행정주사보
염 세 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1, 2, 3호에 의거 파면에 처함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조 진 영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1,2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지하철운영사업소 근무를 명함	〃	지방행정주사

령제237호

중 구 의 경 계 변 경
지방토목기정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 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성 동 구 이 관 중
지방토목기정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 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구 로 구
지방토목기정 김 재 석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종로구보건소
지방약무사 박 철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2,3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종로구보건소
지방의무기좌 조 화 숙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1983년 6월 20일자 명제240호

내 무 국
지방토목기좌 최 세 영

치수과 수방계장

내 무 국
농 림 기 좌 박 인 규

녹지사업소 시험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